

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1년 12월 21일

나. 회부일자 : 1991년 12월 23일

3. 제안이유

- 대규모 상업용 건물의 건축은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하여 개발이익환수 대상임에도 지방세는 면제받은 과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면제대상에서 제외
- 시행자로부터 분양받는 다는 취지를 명백히 함.

4. 주요골자

- 상업용 건축물을 제외한 주택개발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제한
- 제2조 제2호의 자구수정
- “제1호에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”로 개정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는 도시개발법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유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,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세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이므로
- 상업용 건축물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만 과

세면제를 하여 법령과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이상입니다.

○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.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「없습니다」하는 위원 있음)

의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○ 재무국장 유의재

(참 조)

5. 충청북도 새마을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(충청북도지사제출)

(13시 34분)

○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새마을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. 제안하신 관계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